

2012년 제정 ICC 포페이팅통일규칙(URF)에 관한 소고*

허 해 관**

-
- I. 서 언
 - II. 포페이팅거래의 개념과 특징 및 거래구조
 - III. URF의 근간
 - IV. 서류의 인도, 심사, 거절
 - V. 매입대금의 지급과 “유보부 지급”
 - VI. 당사자의 책임
 - VII. 결 언
-

주제어 : 포페이팅, 포페이팅통일규칙, 무역금융

I. 서 언

지난 2012년 11월 12-15일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Commission

* 본고는 2012. 12. 7. 개최된 제48회 한국무역상무학회 산학협동 동계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간단히, 은행위원회, Banking Commission)에서 『포페이팅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Forfaiting: URF)이 채택되었고,¹⁾ 이는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URF 800)*으로 발간되어,²⁾ 2013. 1. 1.부터 발효하였다. URF는 말 그대로 포페이팅거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는 규칙이다. URF의 초안작업은 ICC 은행위원회와 국제포페이팅협회(International Forfaiting Association: IFA)가 협력하여 3년 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작업은 은행위원회 산하 포페이팅초안그룹(Forfaiting Drafting Group)이 담당하였다.³⁾

IFA는 이미 2004년에 2차포페이팅시장(secondary forfaiting market)에 적용되는 규칙인 『IFA Guidelines』⁴⁾을 제정한 데 이어,⁵⁾ 2008년에 『Introduction to the Primary Forfaiting Market』⁶⁾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는 점증하는 포페이팅거래 참여자들 사이에 필요한 표준적인 거래관행을 성문화하여 제공하기 위함이었다.⁷⁾ 위와 같이 IFA가 URF의 제정작업에 동참하게 된 것은 그 동안의 이와 같은 IFA의 업적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⁸⁾

과거 전통적으로 포페이팅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⁹⁾

- 1) <www.iccwbo.org/News/Articles/2012/ICC-unveils-new-rules-for-forfaiting> (2013. 3. 15. 방문) 참조.
- 2) ICC,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URF 800) Including Model Agreements*, ICC Publication No 800E, ICC, 2012(이하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URF 800)'라 인용한다).
- 3) Jean Guy Carrier, Forewords of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URF 800)*, p.3.
- 4) Market Practic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Forfaiting Association, *IFA Guidelines*, Version 100/2004, International Forfaiting Association, 2004(이하 'IFA Guidelines'라 인용한다).
- 5) Preface of *IFA Guidelines* 참조.
- 6) Market Practic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Forfaiting Association, *Introduction to the Primary Forfaiting Market*, Version 100/2008, International Forfaiting Association, 2008(이하 'IFA Introduction to the Primary Forfaiting Market'이라 인용한다).
- 7) IFA *Introduction to the Primary Forfaiting Market*, pp.2-3 참조.
- 8) Donald R. Smith, *Introduction to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URF 800)*, p.7(이하 Smith, *Introduction to URF*로 인용함)
- 9)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의 의미에 관하여 상세히는 후술 II. 2(포페이팅거래의 상환청구불능성) 및 URF 제4조 참조. 종래 "without recourse"는 국내에서 "무소구로"

으로 할인(discount)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지난 20년에 걸쳐 새로운 현대적 포페이팅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¹⁰⁾ 포페이팅은 국제무역에서 유용한 금융수단의 하나이며, 현재 국제포페이팅시장의 규모는 연간 미화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URF의 전반을 조감함과 아울러 URF의 규정들에 기초하여 포페이팅거래의 내부를 간략히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URF라는 새로운 통일규칙을 소개하고자 한다.¹²⁾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포페이팅거래의 개념과 특징 및 구조를 고찰한 후(II), URF의 성격과 규정범위 및 URF에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살펴본다(III). 이어 본고에서는 1차시장과 2차시장에서, 포페이팅거래절차에 따라, 서류의 인도, 심사, 수리, 거절에 관한 URF의 규정들과(IV), 매입대금의 지급과 “유보부 지급” 및 그에 따른 재매입에 관한 규정들을 고찰하고(V), 끝으로 포페이팅거래 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고찰한 후(VI), 글을 마무리한다(VII).

II. 포페이팅거래의 개념과 특징 및 구조

1. 포페이팅거래의 개념

포페이팅거래(forfaiting transaction)는 매도인¹³⁾과 매수인¹⁴⁾ 사이에서 금전

혹은 “무소구조건으로”, “비소구로” 혹은 “비소구조건으로”, “소구권 없이” 또는 “상환청구권 없이”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금융위원회의 공식번역에 따라, 문맥에 따라, “상환청구불능으로” 또는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라고 번역한다.

10) Smith, Introduction to *URF*, p.7.

11) <www.iccwbo.org/News/Articles/2012/ICC-unveils-new-rules-for-forfaiting> (2013. 3. 15. 방문) 참조.

12) URF 초안을 국내에 소개하는 논문으로는, 임재욱, “포페이팅통일규칙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 pp.213-229 참조.

13) 여기의 매도인(seller)은 포페이팅거래에서 지급청구권을 매각하는 자를 말한다(URF 제2조 매도인의 정의 참조).

채권인 지급청구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매하는 거래이다.¹⁵⁾ 상환청구불능에 의한 매매가 가능한 것은 (i) 포페이터로서는 경제적으로 신용도를 갖춘 것으로 널리 인정되는 은행의 보증(어음의 경우 ‘어음보증’) 내지 지급약속(예컨대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독립보증을 발행한 보증은행의 지급약속)이 있고,¹⁶⁾ 또한 (ii) 법적으로 그러한 보증이나 지급약속이 어음보증이나 신용장, 독립보증과 같은 법적도구에 의하여 추상화(抽象化)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

2. 포페이팅거래의 상환청구불능성

포페이팅거래에서 상환청구불능이란 포페이터(지급청구권의 매수인; 1차시장에서는 1차포페이터라 불린다)가 그의 매도인(1차시장의 경우, 원매도인)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상 채무자에 의한 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¹⁸⁾ 여기의 지급채무의 불이행은 원채무자의 불이행과 보증인에 의한 불이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지급청구권의 양수인(즉, 신채권자)으로서 그 채권의 지급기일에 원채무자가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불이행하더라도 그의 양도인(구채권자; 1차시장의 경우 원채권자/수출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환청구불능은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권리포기(waiver)의 방법으로 구현되는바, 예컨대, 지급청구권이 어음(환어음, 약속어음)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는 그 어음의 무담보배서(without recourse endorsement)에 의하고, 지급청구권이 지명채권(예컨대, 신용장대금채권, 매출채권)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채권양도계약)¹⁹⁾에서 그러한 상황

14) 여기의 매수인(buyer)은 포페이팅거래에서 지급청구권을 매입하는 자를 말한다(URF 제 2조 매수인의 정의 참조).

15) URF 제2조 포페이팅거래 정의 참조.

16) Thierry Sénéchal, "Short-term Trade Finance: Factoring and Forfaiting," i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3rd ed.,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8), p. 202.

17) 허해관, “어음을 이용한 포페이팅의 법적 원리,” 『무역상무연구』 제43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p.173.

18) URF 제4조 제a항 제2문.

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는 방법에 의한다.

포페이팅거래의 이러한 상환청구불능성은 수출자(원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청구권에 관한 신용위험(credit risk)과 국가위험(country risk)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지급청구권의 자유로운 양도가능성과 함께 포페이팅을 유력한 무역금융수단으로 만드는 기초가 된다.

3. 포페이팅의 유용성

포페이팅이라는 금융수단은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둘째, 이러한 조기회수에 따라 수출상은 이자율이나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셋째, 비록 만기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수출상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재정상태가 조기에 확정되며, 넷째,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서 무역계약을 협상·체결함에 있어 수출상은 대금지급시기를 일정한 기간의 후불로 하자는 수입상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다섯째, 어음보증을 추가한 보증은행이나 신용장 개설은행, 독립보증을 발행한 보증은행 등의 추상적 지급약속에 의하여 수입상의 신용이 보강 또는 대체되고, 여섯째, 따라서 수출상으로는 별도의 담보제공이 없이도 포페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곱째, 포페이터로서는 그에 따라 2차포페이팅시장(secondary forfaiting market)(간단히 2차시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²⁰⁾

19) 여기의 매매계약은 1차시장에서는 포페이팅계약에 의하여, 2차시장에서는 포페이팅확인에 의하여 체결된다(포페이팅계약과 포페이팅확인에 관하여 상세히는 후술 III. 3(중요한 용어들) 참조).

20) Vincent Whittaker, "The Quick Buck, International Finance, and Forfaiting," 23 *Thomas Jefferson Law Review* 249 (2001), pp.252-254; <<http://www.forfaiters.org/forfaiting/benefits>>의 "Benefits of Forfaiting"; 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삼영사, 2008), p.469; 박세훈·정영동·김중년, "포페이팅거래시 채무증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한국무역학회, 2009), p.274; 허해관, 전계논문, p.173 참조. 또한 포페이팅의 다양한 유용성에 관하여는, 장청·강원진, "포페이팅의 유용성과 한계성에 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한국무역학회, 2008), pp.435-439 참조. 특히 박세훈, "수출대금결제에서 신용위험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팩토링·포페이팅·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73-87 및 오원석·박세훈, 전계논문, pp.159-163은 국제무역

4. 포페이팅의 거래구조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기초거래가 있으며, 그 거래에서 수출자는 수입자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매출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예컨대 환어음(수출자에 의하여)이나 약속어음(수입자에 의하여)이 발행되기도 하고, 개설은행에 의하여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이 발행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수출자(원매도인/양도인/구채권자)는 어음이나 신용장대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1차포페이터(간단히 포페이터; 매수인/양수인/신채권자)에게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각하여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포페이터는 수출자에게 매입대금(purchase price)²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수출자와 포페이터 사이에는 채권양도가 일어나며, URF는 이를 위한 계약을 포페이팅계약(forfaiting agreement)이라 칭한다.²²⁾ 그리고 수출자와 1차포페이터 사이에서 지급청구권이 매매되는 시장을 1차포페이팅시장(primary forfaiting market) 혹은 간단히 1차시장(primary market)이라 부른다.²³⁾ 끝으로 포페이터는 지급청구권의 신채권자로서 원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1차포페이터는 다시 지급청구권을 다른 포페이터(2차포페이터 혹은 매수인)에게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각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매(轉賣, sub-sale)는 계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페이터들 사이에서 지급청구권이 매매되는 시장을 2차포페이팅시장(secondary forfaiting market) 혹은 간단히 2차시장(secondary market)이라 부른다.²⁴⁾ 1차포페이터(매도인)와 그의 매수인 사이에서 포페이팅거래는 후술하는 포페이팅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2차시장에서 최종매수인(최종포페이터)은 지급청구권의 신채권자가 되며 원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다.²⁵⁾

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유력한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포페이팅을 제시하고 있다.

21) 매입대금에 관하여 상세히는 후술 V. 1(매입대금의 지급)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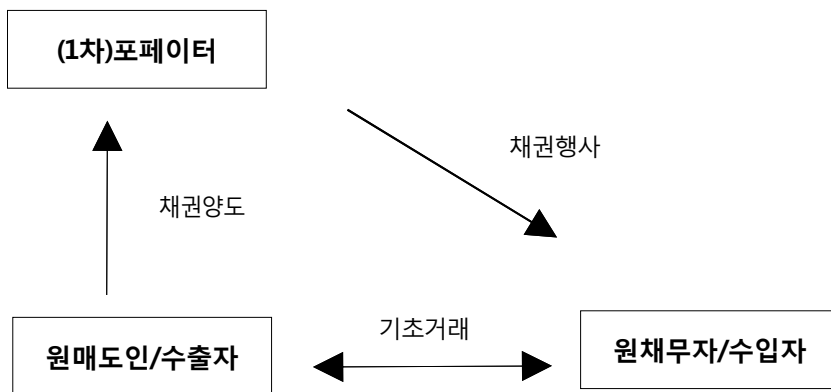
22) URF 제2조 포페이팅계약의 정의 참조.

23) URF 제2조 1차시장의 정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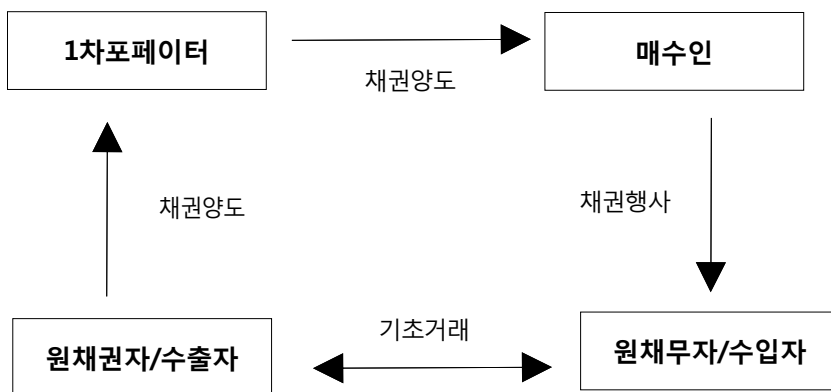
24) URF 제2조 2차시장의 정의 참조.

25) 여기서 “[최종포페이터가 ...] 원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

〈그림 1〉 1차시장 포페이팅거래구조



〈그림 2〉 2차시장 포페이팅거래구조



한다”는 표현은 엄격히 말하자면 약간의 주의를 요한다. 필자는 기초거래에서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수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모두 수입자의 거래대금(수출자의 시각에서 수출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최종포페이터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기초거래의 수입자나 어음보증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면 기초거래상 수입자에 대한 수출자의 대금채권은 소멸한다.

III. URF의 근간

1. URF의 성격

URF는 ICC의 다른 통일규칙들과 마찬가지로²⁶⁾ 기본적으로 제정법률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단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일종의 자치규범이다. 특히 URF에 명정된 각 규칙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이도 구속력을 갖는 관행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는 아직 의문이다.²⁷⁾ 따라서 URF가 당해 포페이팅거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적용합의가 필요하며, URF 제1조 제1문은 이를 명시한다.

URF는 또한 임의규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URF 규정과 달리 합의한 때에는 그것이 우선하고, 당사자들은 URF 특정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도 있다.²⁸⁾

2. URF의 규정범위

URF는 모두 1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시장과 2차시장을 모두 포괄한다. 제1조-제4조 및 제14조는 총칙적 규정에 해당하는데, 제1조는 URF의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제2조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하며, 제3조는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이한 해석을 방지하고자 한다. 제4조는 포페이팅거래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에 관하여 규정하여, 포페이팅거래의 상환청구불능성을 명정함²⁹⁾과 아울러 상환청구불능의 효과³⁰⁾

26)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으로 관행(practice)의 구속력에 관하여는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9조 참조.

27) 예컨대, 2010년 개정 청구보증통일규칙(URDG 758)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2010), pp. 32-33, 100-101 참조; 1998년 제정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박세운·한기문·김상만·허해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2008), pp. 28, 62-63 참조.

28) URF 제1조 제2문 참조.

29) URF 제4조 제a항 제1문 참조.

를 규정한다. 제14조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통지의 발송과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5조-제10조는 1차시장과 2차시장에서 포페이팅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다. 그 중 제5조-제7조는 1차시장을, 제8조-제10조는 2차시장을 규율하며, 양자는 평행적이다. 특히 제7조와 제10조는 포페이팅 거래의 핵심적 절차라 할 수 있는 채권양도를 위한 서류의 인도, 포페이터(매수인)에 의한 서류심사 및 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의 통지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1조와 제12조는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며, 특히 제12조는 포페이터의 유보부 매입과 그에 따른 재매입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3조는 채권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러나 URF는 지급청구권의 매수인(1차시장의 경우, 1차포페이터)이 그 지급청구권의 원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여 지급청구를 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원채무자의 이행(변제)과 불이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URF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URF 목차

- 제1조 URF의 적용(application of URF)
- 제2조 용어정의(definitions)
- 제3조 해석(interpretations)
- 제4조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
- 제5조 1차시장의 포페이팅계약(forfeiting agreements in the primary market)
- 제6조 1차시장의 거래조건(conditions in the primary market)
- 제7조 1차시장에서 적합한 서류(satisfactory documents in the primary market)
- 제8조 2차시장의 포페이팅확인서(forfeiting confirmations in the secondary market)
- 제9조 2차시장의 거래조건(conditions in the secondary market)
- 제10조 2차시장에서 적합한 서류(satisfactory documents in the secondary market)
- 제11조 지급(payment)
- 제12조 유보부 지급(payment under reserve)
- 제13조 당사자의 책임(liabilities of the parties)
- 제14조 통지(notices)

30) URF 제4조 제a항 제2문 참조.

3. 중요한 용어들

여기서는 URF에 등장하는 몇몇의 중요한 용어들을 살펴본다.

(1) 포페이팅거래

전술하였듯이, 포페이팅거래(forfaiting transaction)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금전채권인 지급청구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매하는 거래인바,³¹⁾ 이는 1차시장의 포페이팅거래와 2차시장의 포페이팅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1차시장에서 포페이팅거래는 포페이팅계약(forfaiting agreement)에 의하여 발생하고, 2차시장에서는 포페이팅확인(forfaiting confirmation)에 의하여 발생한다.

(2) 포페이팅계약

1차시장에서 포페이팅계약은 1차포페이터(primary forfaiter)와 원매도인(initial seller)(기초거래상 대금채권의 채권자/수출자) 사이에 체결된다. 이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양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³²⁾ 그 계약서에는 포페이팅의 거래조건이 명시된다.

포페이팅계약에서는 특히 다음의 사항들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되어야 한다.³³⁾ 첫째, 무엇보다도 지급청구권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다. 특히 지급청구권의 금액과 통화, 지급기일 및 그 채무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포페이팅 계약체결일에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원매도인이 필요서류로서 포페이터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서류들의 종류를 명시하고, 특히 별도의 신용보강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이용가능기일³⁴⁾과 지급청구권의 매입가격, 결제일³⁵⁾(또는 결제예정일)이 명시

31) URF 제2조 포페이팅거래의 정의 참조.

32) URF 제2조 포페이팅계약의 정의 참조

33) URF 제5조 제b항 참조.

34) 이용가능기일에 관하여는 후술 (6) 및 URF 제2조 정의 참조.

35) 이는 매입대금의 지급일을 말한다.

되어야 한다. 넷째, 준거법조항이나 재판관할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포페이팅확인(서)

2차시장에서, 1차포페이터(매도인)는 원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급청구권을 2차포페이터(매수인)에게 매각(양도)한다. 2차포페이터(매도인)는 이를 전매(轉賣)하여 제3자(후속매수인)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전매는 수차 계속될 수 있다. 2차시장에서 그러한 지급청구권매매의 양당사자를 각각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이라 통칭한다.³⁶⁾

2차시장에서 포페이팅거래의 발생을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지급청구권을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³⁷⁾ 이러한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2차매매조건을 합의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포페이팅확인(forfeiting confirmation)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포페이팅확인(서)은 먼저 1차포페이터(매도인)가 포페이팅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에 서명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면, 매수인이 그에 서명하여 이를 1차포페이터(매도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러한 포페이팅확인서에는 대개 2차매매조건(거래조건)이 명시된다.

위와 같은 포페이팅확인절차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보자면, 1차포페이터(매도인)는 그와 매수인 사이에 2차매매조건이 합의된 일자(“거래일”)³⁸⁾의 다음날부터 2영업일 내에 매수인에게 서명된 포페이팅확인서를 인도하여야 한다.³⁹⁾ 포페이팅확인서에는 2차매매조건이 명시되며, 만약 거래일 후에 2차매매조건의 변경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와 같이 변경된 조건이 명시된다. 1차포페이터(매도인)가 그러한 기간 내에 포페이팅확인서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자신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1차포페이터(매도인)에게 통지하여 포페이팅거래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⁴⁰⁾ 그와 아울러 매수인은 1차포페이터(매도인)에

36) URF 제2조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의 각 참조.

37) URF 제8조 제a항 참조.

38) URF는 이러한 일자를 “거래일”(trade date)이라 한다(URF 제2조 거래일의 정의 참조).

39) URF 제8조 제b항 제1문 참조.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포페이팅확인서를 수령한 매수인은 수령일의 다음날부터 2영업일 내에 그에 서명하여 이를 1차포페이터(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⁴¹⁾ 만약 포페이팅확인서(에 명시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그러한 취지 및 자신이 동의하지 하지 않는 이유를 1차포페이터(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반대통지”).⁴²⁾ 매수인이 그러한 2영업일 내에 서명된 포페이팅확인서를 1차포페이터(매도인)에게 반환하지도 않고 반대통지도 하지 않는다면, 1차포페이터(매도인)는 자신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포페이팅거래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⁴³⁾ 나아가 이때 1차포페이터(매도인)는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수인이 1차포페이터(매도인)에게 위와 같이 포페이팅확인서에 대한 반대통지를 하는 경우에, 1차포페이터(매도인)와 매수인은 그러한 반대통지의 수령일의 다음날부터 2영업일 내에 포페이팅확인서를 변경하는 합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합의가 성사되면 그것이 포페이팅확인서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2영업일 내에 당사자들이 변경된 포페이팅확인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포페이팅거래는 중단된다.⁴⁴⁾ 그러나 그 후에도 쌍방은 언제든지 포페이팅확인서에 서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포페이팅확인, 즉, 이른바 ‘2차시장에서의 포페이팅거래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⁴⁵⁾

(4) 지급청구권

지급청구권(payment claim)은 포페이팅거래의 객체이다. 이는 금전채권이며, 그 채권자가 원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일자에 또는 청구시에⁴⁶⁾ 특정한 금액

40) URF 제8조 제b항 제2문 참조.

41) URF 제8조 제d항 제i호 참조.

42) URF 제8조 제d항 제ii호 참조.

43) URF 제8조 제e항 참조.

44) URF 제8조 제f항 참조.

45) URF 제8조 제g항 참조.

46) 예컨대,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 지급시기는 어음의 지급제시가 언제인지에 의존한다.

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이다.⁴⁷⁾ 실무상 지급청구권은 대체로 어음(환어음, 약속어음)에 표창되어 어음채권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지명채권의 일종인 신용장대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한다.⁴⁸⁾ 따라서 지급청구권 양도의 구체적 방법은 어음의 배서교부나 지명채권양도계약에 의한다. 다만 필자가 알기로, 현재 우리나라 은행실무에서 포페이팅은 주로 신용장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5) 거래조건

거래조건(condition)은 포페이팅계약서(1차시장의 경우)나 포페이팅확인서(2차시장의 경우)에 명시되는 거래조건(즉 계약조건)을 의미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된다.

각 당사자는 이용가능기일 이전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모든 거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되,⁵⁰⁾ 다만 이용가능기일까지 특정한 거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합의로 이용가능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⁵¹⁾ 그러한 연장이 없이 이용가능기일까지 거래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만약 이용가능기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렇게 연장된 기일까지 거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포페이팅계약(1차시장의 경우)이나 포페이팅확인(2차시장의 경우)은 종료한다.⁵²⁾ 물론 이때 거래조건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위반책임을 지게 된다.

(6) 이용가능기일

이용가능기일(availability date)⁵³⁾은 매도인(1차시장의 경우 원매도인)이 매

47) URF상 지급청구권은 “원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URF 제2조 지급청구권의 정의 참조).

48) 다만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있는 경우)이 인수한 환어음이 존재하므로, 이때 지급청구권은 환어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49) 예컨대, 한국수출입은행, 『알기 쉬운 포페이팅 수출제도금융안내』(한국수출입은행, 2009. <http://www.koreaexim.go.kr/kr/file/14/Forfaiting_guide.pdf> p.2 참조.

50) URF 제6조 제a항 및 제9조 제a항 각 참조.

51) URF 제6조 제b항 및 제9조 제b항 각 참조.

52) URF 제6조 제c항 및 제9조 제c항 각 참조.

수인(1차시장의 경우 1차포페이터)에게 적합한 서류를 제공하고 기타 거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최종일을 의미한다.⁵⁴⁾ 1차시장에서 원매도인(수출자)은 이용가능기일 이전에 모든 필요서류를 1차포페이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⁵⁵⁾ 그 후에 서류가 인도되는 경우에, 이는 거래조건의 위반이 되고, 포페이터는 서류를 거절하고 매입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원매도인은 이용가능기일 이전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모든 거래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용가능기일에 관한 사항은 2차시장에서 1차포페이터(매도인)와 2차포페이터(매수인)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⁵⁶⁾

(7) 신용보강서류

원채무자의 신용도가 충분히 높은 경우(예컨대, 우량한 대기업)를 제외하고, 포페이터가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지급청구권을 매입하는 것은 신용을 인정받고 있는 제3자(보증인)가 그 지급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신용보강(credit supporting)이라 하며, 포페이팅계약상 원매도인은 포페이터에게 필요서류로서 신용보강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URF는 신용보강서류를 “원채무자 이외의 자의 지급청구권에 관한 지급의무를 증빙하는 서류”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⁷⁾

신용보강서류의 종류는 당해 지급청구권의 존재형태에 따라 다르다. 지급청구권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따라 신용보강이 필요한지가 결정되고, 필요한 경우에 그 신용보강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급청구권이 어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 신용보강은 은행이 어음에 보증인(“어음보증인”)으로서 서명하는 방법(“어음보증”, Aval)에 의하므로, 별도의 신용보강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지급청구권이 신용장대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채무자가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있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신용보강서류는

53) 이는 신용장의 유효기일(expiry date)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UCP 600 제6조 참조).

54) 제2조 이용가능기일의 정의 참조.

55) URF 제7조 제a항 참조.

56) URF 제10조 제a항 참조.

57) URF 제2조 신용보강서류의 정의 참조.

요구되지 않는다.⁵⁸⁾ 더욱이 인수신용장의 경우에 지급청구권은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있는 경우)이 인수한 환어음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제3자의 어음보증이 추가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급청구권이 매출채권(즉 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대금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 신용보강은 수출자를 위하여 수입자의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고 독립보증의 성격을 갖는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⁵⁹⁾이나 지급보증신용장(payment letter of credit)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지급보증이나 지급보증신용장에 관한 서류가 신용보강서류를 구성한다.

(8) 필요서류

1차시장에서 원매도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1차포페이터에게 (이용가능기 일 내에) 모든 필요서류(required document)를 인도하여야만 적합한 서류를 인도한 것이 되어 매입대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⁶⁰⁾ 이는 2차시장에서 1차포페이터(매도인)과 2차포페이터(매수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⁶¹⁾ 필요서류의 종류는 지급청구권의 형태와 신용보강방법에 따라 다르며, 각각 해당 포페이팅계약서(1차시장의 경우)와 포페이팅확인서(2차시장의 경우)에 명시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⁶²⁾

- ① 지급청구권을 증빙하는 서류, 및 원채무자가 지급청구권을 보충하거나 그에 수반할 목적으로 발행한 서류
- ② 채무자와 매도인의 서명의 진정성과 구속력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목적이나 지급청구권이나 신용보강서류상으로 지급채권을 강제하거나 행사하는 때에 제시할 목적으로 결제일에 요구되는 서류

58) 다만 이때에는 신용장 자체가 신용보강서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59) 지급보증에 관하여 상세히는,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p.18; 지정준·정용혁, 『청구보증통일규칙 실무가이드』(한국금융연수원, 2012), pp.87-88 참조.

60) URF 제7조 참조.

61) URF 제10조 참조.

62) URF 제2조 필요서류의 정의 참조.

- ④ 신용보강서류
- ⑤ 포페이팅계약이나 포페이팅확인서에 명시된 기타 서류. 이는 기초거래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 ⑥ 서류부적합통지를 하면서 1차포페이터(1차시장의 경우)가 원매도인에게 요구한 추가서류 및 매수인(2차시장의 경우)이 그의 매도인에게 요구한 추가 서류.

(9) 적합한 서류

매도인(1차시장의 경우 원매도인)은 포페이터(매수인)에게 “적합한 서류”(satisfactory documents)⁶³⁾를 제공한 경우에만 매입대금청구권을 갖는다. 적합한 서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포페이팅계약서나 포페이팅확인서에 명시된 모든 필요서류가 제시되고 또한 제시된 각각의 필요서류가 포페이팅계약서나 포페이팅확인서에 명시된 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포페이터(매수인)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

IV. 서류의 인도, 심사, 거절

1. 서류의 인도와 심사

원매도인은 이용가능기일 이내에 모든 필요서류를 1차포페이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⁶⁴⁾ 그에 따라 1차포페이터는 먼저 원매도인이 인도한 서류를 심사하여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⁶⁵⁾ 만약 필요서류가 아닌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원매도인에게 반환할 수 있

63) 이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 용어정의)이나 청구보증통일규칙(URDG 758 제2조 용어정의)에서 규정하는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이나 “일치하는 지급 청구”(complying demand)에 상당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64) URF 제7조 제a항 참조.

65) URF 제7조 제b항 제i호 참조.

다.⁶⁶⁾ 이러한 규칙은 2차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아가 1차포페이터는 인도된 서류가 “적합한 서류”(satisfactory documents)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⁶⁷⁾ 이때 1차포페이터는 “시장의 관행에 따라”(in accordance with market practice) 서류를 심사하여야 하는데,⁶⁸⁾ 여기의 서류 심사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나 청구보증통일규칙(URDG 758), 보증 신용장통일규칙(ISP98)과 달리 문면심사⁶⁹⁾가 아닌 실질심사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만약 서류가 실제적 진실에 반하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1차포페이터는 특히 ① 필요서류가 그 진정성에 관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지지되는지 여부, ②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의무가 각각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 ③ 지급청구권에 따른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적합한 통화로 상계나 반대청구 없이 또는 세금 기타의 사유로 감액 또는 유보됨이 없이 전액 지급될 것인지 여부, ④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가 자유로이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⑤ 필요서류가 포페이팅계약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⁷⁰⁾ 이는 2차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통지

1차포페이터는 서류심사에 따라 서류가 적합한 서류가 아니라고 결정하거나 추가서류가 요구된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원매도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부적합통지”).⁷¹⁾ 이러한 부적합통지에서는 그 이유의 세부적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또한 추가서류한 필요한 때에는 어떤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⁷²⁾ 1차포페이터가 적합한 서류라고 결정

66) URF 제7조 제b항 제ii호 참조.

67) URF 제7조 제c항 제ii호 참조.

68) URF 제7조 제c항 제i호 참조.

69) 문면심사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제a항, 청구보증통일규칙(URDG 758) 제19조 제a항,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 제4.01조 제b항 각 참조.

70) URF 제7조 제d항 참조.

71) URF 제7조 제e항 참조.

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되(“적합통지”), 이때에는 별도의 통지 대신에 바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⁷³⁾ 이는 2차시장에서 매도인(경우에 따라 1차포페이터)과 매수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적합통지나 부적합통지 후에, 혹은 매입대금지급 후에 비로소 서류부적합 사실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에, 1차시장에서 1차포페이터는 원매도인에 대하여, 그리고 2차시장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매도인(경우에 따라 1차포페이터)에 대하여 계약위반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포페이팅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신용장거래와 달리 신용장의 독립성⁷⁴⁾이나 서류성,⁷⁵⁾ 문면심사의 원칙, 서류거절에 관한 실권(失權)의 규칙(preclusion rule)⁷⁶⁾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 2차시장에만 적용되는 특칙

위의 1과 2에서 논의된 서류의 인도와 심사, 수리 및 거절통지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이 2차시장에서 1차포페이터(매도인)와 그의 매수인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⁷⁷⁾ 2차시장에서만 적용되는 특칙도 있으며 다음과 같다.

2차시장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정한 서류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통지로써 일정한 서류심사기간을 명시하면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한 서류심사기간은 통지수령일의 다음날부터

72) URF 제7조 제c항 참조.

73) URF 제7조 제f항 참조.

74) 화환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하여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4조, 보증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하여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 제1.06조 제c항 각 참조.

75) 화환신용장의 서류성에 관하여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5조, 보증신용장의 서류성에 관하여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 제1.06조 제d항 각 참조. 흔히 여기의 “서류성”을 “추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76)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위와 같은 실권규칙에 관하여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제f항,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실권규칙에 관하여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 제5.03조 각 참조.

77) URF 제10조 참조.

최소한 5영업일 이상이어야 한다.⁷⁸⁾ 매도인이 이와 같이 서류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였는데도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서류부적합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이 인도받은 서류가 부적합한 서류라고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⁷⁹⁾

V. 매입대금의 지급과 “유보부 지급”

1. 매입대금의 지급

(1) 매입대금

포페이팅거래는 지급청구권의 매매이므로 매수인(1차시장의 경우, 1차포페이터)은 매도인(1차시장의 경우, 원매도인)에게 매입대금(purchase price, 혹은 매입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입가격은 양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여지되,⁸⁰⁾ 기본적으로 당해 지급청구권 금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여기의 할인율에는 관련이자율 및 당해 지급청구권의 지급위험의 정도, 원채무자 국가의 국가위험 등이 반영된다. 또한 매입대금 속에는 매입수수료가 반영된다. 매입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에 의한 공제나 반대청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⁸¹⁾

(2) 지급시기

매입대금은 “결제일”(settlement date)에 지급되어야 한다.⁸²⁾ 매도인(1차시장의 경우, 원매도인)과 매수인(1차시장의 경우, 1차포페이터)이 매입대금의 지

78) URF 제10조 제e항 참조.

79) URF 제10조 제f항 후단 참조.

80) URF 제2조 매입대금의 정의 참조.

81) URF 제11조 제b항 참조.

82) URF 제11조 제a항 참조.

급일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합의된 일자가 결제일이 된다.⁸³⁾

그러한 결제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1차시장의 경우, 원매도인/수출자)이 매수인(1차시장의 경우, 1차포페이터)에게 적합한 서류를 인도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에 대하여 적합한 서류라고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일자가 결제일이 된다.⁸⁴⁾ 그러나 2차시장에서는 부적합한 서류가 인도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도인이 지정한 “최소 5영업일”⁸⁵⁾ 이상의 심사종료기간을 위반한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부적합한 서류라고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권리의 상실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일자가 결제일이 된다.⁸⁶⁾

다만 만약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지급은 지급기일 후에 그 장소의 첫 영업일에 이루어져야 한다.⁸⁷⁾

(3) 지급장소와 통화

매입대금의 지급은 포페이팅계약이나 포페이팅확인서에 명시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⁸⁸⁾ 만약 그렇게 명시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 지급장소는 당해 포페이팅거래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체로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대금채권자(매도인)의 영업소소재지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매입대금은 포페이팅계약이나 포페이팅확인서에 명시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되, 지급은 ‘그 지급장소에서 즉시 이용가능한 자금(immediately available funds)’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⁸⁹⁾

83) URF 제2조 결제일의 정의 참조.

84) URF 제2조 결제일의 정의 참조.

85) 2차시장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정한 기간 명시하면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되, 그러한 기간은 최소한 통지의 수령일로 5영업일이야 한다(URF 제10조 제e항).

86) URF 제2조 결제일의 정의 참조.

87) URF 제11조 제c항 참조.

88) URF 제11조 제c항 참조.

89) URF 제11조 제c항 참조.

2. 유보부 지급과 재매입

부적합한 서류가 인도된 경우에, 매도인(1차시장의 경우 원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1차시장의 경우, 1차포페이터)은 “유보부 지급”(payment under reserve)을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URF는 이러한 유보부 지급을 “매수인이 유보사유가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지급을 ...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⁹⁰⁾ 환언하면 이는 “조건부 지급”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만약 추후에 유보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⁹¹⁾

유보부 지급을 하는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① 유보사유(points of reserve), ② 유보기일(reserve date) 및 ③ 재매입조건(repurchase terms)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⁹²⁾ 이러한 사항들이 기존의 포페이팅계약이나 포페이팅확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포페이팅계약이나 포페이팅확인서는 그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⁹³⁾ 여기의 유보사유는 “[당해] 지급이 종국적인 것으로 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하는 ... 매도인의 의무”를 말하고,⁹⁴⁾ 유보기일은 “매도인이 유보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는 시한이 되는 일자”를 말한다.⁹⁵⁾ 유보기일은 쌍방의 합의로 정하여지며, 상황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유보기일을 연장될 수 있다. 한편 여기의 재매입조건은 원래의 매매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비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진다.⁹⁶⁾

매도인은 유보기일까지 유보사유를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유보기일(연장된 유보기일 포함)이 만료하기까지 유보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재매입조건으로 재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⁹⁷⁾ 이러한 매

90) URF 제2조 유보부(under reserve)의 정의 참조.

91) URF 제12조 제c항 참조.

92) URF 제12조 제a항 제i호-제iii호 참조.

93) URF 제12조 제a항 참조.

94) URF 제2조 유보사유의 정의 참조.

95) URF 제2조 유보기일의 정의 참조.

96) URF 제12조 제a항 제iii호 참조.

97) URF 제12조 제c항 참조.

수인의 재매입요구가 있으면, 매도인은 그러한 재매입요구 통지를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5영업일 내에 재매입조건에 따라 재매입을 완결하고 매수인에게 재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⁹⁸⁾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재매입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5영업일 내에, ①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② 지급청구권에 관한 권리와 신용보강서류 기타 필요서류가 매도인에게 재양도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⁹⁹⁾

VI. 당사자의 책임

포페이팅거래는 지급청구권을 매매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매매계약이며, 단지 그 객체가 금전채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이다. 계약상 당사자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무불이행 내지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쌍방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계약위반책임에 관한 합의의 공백은 그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 보충된다.

URF는 제13조에서 당사자의 책임의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URF의 자치규범적 성격에 의하여, 당해 준거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구성한다. URF가 규정하는 당사자의 책임은 ① 포페이팅거래의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책임과 ② 1차시장에서 원매도인이 1차포페이터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③ 2차시장에서 1차포페이터가 그의 매수인(혹은 2차포페이터)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④ 2차시장에서 1차포페이터가 아닌 매도인이 그의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98) URF 제12조 제d항 참조.

99) URF 제12조 제e항 참조.

1. 일반적 책임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일반적 사유로는 ① 당사자가 포페이팅계약이나 2차매매조건 또는 포페이팅확인서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할 권한을 갖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의무의 부담과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포페이팅계약이나 포페이팅확인서에 따르거나 포페이팅확인서의 서명 전의 2차매매조건에 따른 그의 의무가 적법 또는 유효하지 않거나,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 않은 경우가 있다.¹⁰⁰⁾

2. 원매도인의 1차포페이터에 대한 책임

원매도인이 1차포페이터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¹⁰¹⁾ 이는 위와 같은 일반적 책임에 추가되는 것이다.

- ① 원매도인이 결제일에 지급청구권이나 신용보강서류 또는 기초거래에 관하여
 - a) 지급기일에 지급청구권의 존재, 또는 b)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와 의무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나 사정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거래일 전에 1차포페이터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② 원매도인이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때에, 원매도인이 그러한 지급청구권과 권리의 유일한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거나, 그러한 지급청구권과 권리가 제3자의 권리주장이나 권리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한 경우
- ③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가 결제일이나 그 전에 1차포페이터에게 취소불능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
- ④ 결제일 전이나 후에, 원매도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청구권의 존재 또는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와 의무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지급청구권이나 신용보강서류 또는 기초거래에 따른 의무로서 그에게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100) URF 제13조 제a항 참조.

101) URF 제13조 제b항 참조.

- ⑤ 결제일 전이나 후에, 지급청구권 또는 지급청구권의 존재나 신용보강서류상의 의무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거래에 관하여 사기가 있었던 경우

3. 1차포페이터의 2차포페이터에 대한 책임

1차포페이터가 그의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¹⁰²⁾ 이도 역시 위의 일반적 책임에 추가되는 것이다.

- ① 1차포페이터가 지급청구권이나 신용보강서류 또는 기초거래에 관하여 지급청구권의 존재나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와 의무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나 사정에 관한 정보를 원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거래일이나 그 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 ② 1차포페이터가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때에, 양도되는 지급청구권과 권리의 유일한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거나, 그러한 지급청구권과 권리가 제3자의 권리주장이나 권리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한 경우
- ③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가 결제일이나 그 전에 매수인에게 취소불능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 ④ 1차포페이터가 지급청구권을 매입하는 때에,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가 적법·유효하고 관련의무자에 대하여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다는 것과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가 취소불능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데 시장의 관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⑤ 1차포페이터가 지급청구권을 매입하는 때에, 필요서류가 기초거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 데 시장의 관행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1차포페이터가 아닌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책임

1차포페이터가 아닌 매도인이 그의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사유

102) URF 제13조 제c항 참조.

는 다음과 같다.¹⁰³⁾ 이도 역시 위의 일반적 책임에 추가되는 것이다.

- ① 매도인이 지급청구권이나 신용보강서류 또는 기초거래에 관하여 지급청구권의 존재나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나 사정에 관한 정보를 그의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거래일이나 그 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 ② 매도인이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때에, 그러한 지급청구권과 권리의 유일한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거나, 그러한 지급청구권과 권리가 제3자의 권리주장이나 권리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한 경우
- ③ 지급청구권과 신용보강서류상의 권리가 결제일이나 그 전에 매수인에게 취소불능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위와 같은 각각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으면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고, 또한 당사자들은 쌍방의 합의로 그러한 각각의 책임을 배제할 수도 있다.¹⁰⁴⁾ 또한 매도인은 오직 그의 직접적 매수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책임이 장래의 매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거나 그러한 사유에 관한 의무의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또는 기타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후속하는 매수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¹⁰⁵⁾

VII. 결 언

위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포페이팅거래는 포페이터라는 무역금융제공자가 국제적 매출채권에서 유래하는 지급청구권을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는 거래이다. 포페이팅거래의 이러한 성격은 수출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청구권에

103) URF 제13조 제d항 참조.

104) URF 제13조 제e항 참조.

105) URF 제13조 제f항 참조.

관한 신용위험과 국가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에 포페이팅은 국제무역 금융을 일으키는 다양한 기법 중의 하나로서, 근래에 포페이팅의 국제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국제적 추세에 따라 ICC는 IFA와 협력하여 2012년에 URF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일종의 자치규범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URF라는 새로운 통일규칙을 국내에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포페이팅거래에서 일어나는 서류의 인도, 심사, 수리, 거절 등의 문제에 관한 URF의 규정들을 거래절차별로 살펴보고, 아울러 특히 매입대금의 지급과 “유보부 지급” 및 그에 따른 재매입에 관한 규정들과 포페이팅거래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수출중소기업을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은행실무에서 포페이팅의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이 제정된 URF를 국내 은행업계와 무역업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리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국내 실무당사자들이 포페이팅을 실무상 이용함에 있어 본고가 포페이팅의 거래구조와 절차를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당사자간의 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포페이팅의 이용과 그에 따른 URF의 활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무역결제론』 개정판, 박영사, 2007.
- 박세훈, “수출대금결제에서 신용위험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팩토링·포페이팅·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세훈·정영동·김중년, “포페이팅거래시 채무증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 박세운·한기문·김상만·허해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2008.
-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2010.
- 양영환·오원석·박광서, 『무역상무』, 삼영사, 2008.
- 오원석·박세훈, “국제대금결제에서의 신용위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팩토링·포페이팅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임재욱, “포페이팅통일규칙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
- 장청·강원진, “포페이팅의 유용성과 한계성에 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8
- 지정준·정용혁, 『청구보증통일규칙 실무가이드』, 한국금융연수원, 2012.
- 최정호·이제현, 『무역결제론』 개정판, 박영사, 2007.
- 한국수출입은행, 『알기 쉬운 포페이팅 수출제도금융안내』, 한국수출입은행, 2006. <http://www.koreaexim.go.kr/kr/file/14/Forfaiting_guide.pdf>
- 허해관, “어음을 이용한 포페이팅의 법적 원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 Affaki, Georges & Roy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ICC, 2011.
- Baker, Walter (Buddy) & John, F. Dolan,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 Credits under UCP 60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8
- D'Arcy, Leo & Carole Murray, *Schmittoff's Export Trade - The Law &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2000.
- Grath, Ander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Kogan Page, 2008.
- ICC,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URF 800) Including Model Agreements*, ICC, 2012.
- Lütschg-Emmenegger, Margrith, *A Guide to Forfaiting*, Euromoney Books, 1998
- Market Practic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Forfaiting Association, *IFA Guidelines*, International Forfaiting Association, 2004.
- _____, *Introduction to the Primary Forfaiting Market*, International Forfaiting Association, 2008.
- Ripley, Andy, *Forfaiting for Exporters - Practical Solutions for Global Trade Finance*,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1996
- Sénéchal, Thierry & Gary Collyer, "International Payment Option," i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3rd ed.,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8), pp. 147-191.
- Sénéchal, Thierry "Short-term Trade Finance: Factoring and Forfaiting," i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3rd ed.,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8), pp. 193-208.
- Whittaker, Vincent, "The Quick Buck, International Finance, and Forfaiting," 23 *Thomas Jefferson Law Review* 249 (2001).

ABSTRACT

A Brief Study on ICC's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Adopted in 2012

Heo, Hai Kwan

This article introduces and briefly examines the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URF)(ICC Publication No. 800), which were prepared by a joint project of the Banking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nd the International Forfaiting Association (IFA), and became effective on January 1, 2013. Forfaiting is a kind of trade financing technic performed by way of a sale and purchase of payment claim between its seller and its buyer, the forfaiter, on a without recourse basis. URF is designed to facilitate global trade finance and embraces all the international payment instruments which are currently used and will be newly developed in the future. URF is expected to be a set of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for both the primary and secondary forfaiting market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first looks into the concept of the forfaiting and certain features and structure of forfaiting transactions. Then this article moves to discussing URF itself. For this it examines (i) the nature and scope of URF and some important definitions provided in URF, (ii) some provisions of URF that apply to the delivery of documents to the forfaiter, the examination, and the acceptance or refusal, of such documents by the forfaiter, and (iii) the payment of purchase price by the forfaiter to its seller, including the matter of "payment under reserve" and repurchase by the seller from the forfaiter.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liabilities of the parties concerned, before conclusion.

Key Words : Forfaiting, URF, Trade Finance